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47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서미화・김성환・김원이

박수현 • 박지혜 • 박정현

박희승 • 박해철 • 복기왕

이기헌 • 이병진 • 이연희

오세희 • 안규백 • 윤중군

조 국・조계원・조인철

정일영・정준호・허 영

황정아 • 추미애 의원

(23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의료법」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 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진료 거부의 금지)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 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법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진료 거부의 금지) 의
	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
	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
	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
	법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	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
	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
	<u>다.</u>